#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215 발 의 년 월 일:2024년 10월 16일

발 의 자:김 경, 김기덕, 김성준, 박승진, 박칠성, 봉양순,

막승신, 막실성, 동양순, 송도호, 왕정순, 이병도, 이상훈, 이용균, 이원형,

최기찬 의원(13명)

찬 성 자: 문성호, 이종환 의원(2명)

### 1. 제안이유

-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· 감독이 부실하여 체육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음주 · 흡연 · 취사행위 등으로 인한 건전한 체육활 동 분위기가 저해되고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불만 민원이 발생하 고 있음.
- 이에 공공체육시설 내 음주·흡연·취사 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 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사용·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하도록 함(안 제5조의3제2항)
- 나.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어, 사용 허가의 제한도 위임사무에 추가하도록 함(안 제23조제1항제1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을 제5조의3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·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.

제23조제1항제1호 중 "회원모집·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"를 "회원모집·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, 제5조의3에 따른 사용 허가의 제한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해 개 정 아 혀 제5조의3(사용허가의 제한) 다음 제5조의3(사용허가의 제한) 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(현행과 같음) 에는 체육시설 사용 • 이용을 허 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.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.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 고 인정될 때 3.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<신 설> ② 제1항에 따라 사용·이용허 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. 제23조(사무의 위임) ① 이 조례 제23조(사무의 위임) ① (현행과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울특 같음) 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제3장에 따라 법인 · 단체 · 개인 등에 위탁하 는 체육시설과 제2항에 따라 구 청장이 관리 · 운영하는 체육시 설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- 허가의 변경 및 생활체육교실
- 1.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, 사용 1.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, 사용 허가의 변경 및 생활체육교실 을 운영하기 위한 <u>회원모집 ·</u> 을 운영하기 위한 <u>회원모집 ·</u>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, 제5조의3에 따른 사용 허가의 제한

2. ~ 12. (생략)

2. ~ 12. (현행과 같음)

#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# 1. 판단 근거

○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의3(사용허가의 제한) 제2항에 체육시설 사용·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금지1)를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2)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제승

® 02-2180-7954

e-mail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① 삭제 <2019.5.2.>

<sup>1)</sup> 동 개정안 제5조의3(사용허가의 제한)제1항에 의한 사용·이용허가 취소처분을 받는 자에게 향후 별개의 사용허가를 추가로 30일의 범위에서 금지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취소처분에 의한 반환(세입감소)이 선제되기에 본 사안의 경우 별도의 세입감소를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<sup>※</sup> 사용·이용허가 취소처분을 받는 자는 현행 같은 조례 제11조(사용료의 반환)에 따라 반환대상에 해당함

②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**사용허가취소**(사용연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**반환한다** 

<sup>2)</sup> 사용허가 금지를 받은 자한테 최대 30일동안 사용·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세입감소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특정인에 대한 일시적인 기간이며, 또한 그 외 다른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어 전체수입(서울시 재정수입)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